

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9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최재란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김지향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봉양순, 서상열, 서준오,
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
정준호, 홍국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중인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간식을 제공하고, 이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6조에 의거하여 공립 특수학교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함(안 제4조)
-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, 제공 방식 및 위생 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등

서울특별시 조례 제
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.

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
에 따른 공립학교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
교육을 실시하는 같은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조제3호에 따른 공·사립
학교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)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
고려하여 간식의 종류, 제공방식 및 위생·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
있다.

부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적용 범위) <u>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적용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적용 범위) <u>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.</u></p> <p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</p> <p>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같은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조제3호에 따른 공·사립학교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)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간식의 종류, 제공방식 및 위생·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(적용 범위)제1호 및 제2호를 수정 및 신설하여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제8조(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)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간식의 종류, 제공방식 및 위생·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임
- 수정 및 신설 조문인 조례 제8조(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)는 교육감의 여러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고, 제4조(적용 범위)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 (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·돌봄지원팀 및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)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